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1~3

# 서울시보

제 2087 호 1997. 12. 23.(화)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br>람 | 기<br>관<br>의<br>장 |
|--------|------------------|

● 조 려

|          |                             |    |
|----------|-----------------------------|----|
| 제 3443 호 |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              | 2  |
| 제 3444 호 | 서울특별시새조례중개정조례               | 5  |
| 제 3445 호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 7  |
| 제 3446 호 | 서울특별시불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18 |
| 제 3447 호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          | 20 |
| 제 3448 호 |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21 |
| 제 3449 호 |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 21 |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청안제도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㉞

●서울특별시조례제3443호

서울특별시민청안제도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  
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받  
아들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청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종류) ① 창안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창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  
로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 "추천창안"이라 함은 지의성 있는 시책  
발달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  
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  
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시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  
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시제입 증대방안
5.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  
적인 방안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  
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  
하였거나 공무원채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  
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  
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  
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  
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을 경우 제1항제1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거주지나 직장의 주  
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등) ①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  
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  
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  
터 1년 이내에 추천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출한 창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  
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

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제7조(시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에게 제출된 창안의 채택·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전과 관련되는 4남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회의는 시정개발담당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시장이 상정한 창안에 대하여 제4조 해당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시정개발담당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정개발담당관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시정개발담당관 제도개선계장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채택등급 등) 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서상 시기) 채택된 창안의 서상은 연 2회 수여한다.

제17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시장은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민창안운영규정(훈령제788호)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시정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訓令”으로 운영중인 “市民創案規程”을 “條例”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창안의 종류(제2조)

- (1) 자유창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창안
- (2) 추천창안 : 창의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창안

나. 창안의 제안분야(제3조)

- (1) 시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시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시세입 증대방안

(5)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다. 창안 제외 대상(제4조)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각종 제도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막대한 경비소요,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질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제안자의 자격 : 직장이나 거주지의 주소가 서울시에 있는 자(제5조)

마. 시민창안심사위원회 :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7조 내지 제13조)

바. 심사기준 : 창의성·예산절감효과·절차간소화, 세입증대, 주민편익증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함(제14조).

사. 채택 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제15조)

아. 시상 시기 : 연 2회(제16조)

자. 부상 등 : 상장(또는 상패)과 부상(예산의 범위 내)을 수여(제17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44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27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통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과 반장은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방세심의위원회) ㉑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㉒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㉓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㉔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㉕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㉖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㉗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㉒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세운) 법 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건설업법 제1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가.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

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가.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지상권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다. 지역권
    -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나.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경기종료 후 즉시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2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406호) 시행일(1997. 10. 1)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지방세법령(97. 10. 1) 및 동법시행규칙(97. 10. 4)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축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나.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재무국장으로 함(제16조).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課稅前適否審査請求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둠(제16조의2제1항).

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제16조제2항).

마. 지방세법이 취득세 및 부동산등록세 새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 규정함(제19조의2 및 제23조의2).

바. 지방세법령의 용어 중 "건설기계"가 "기계장비"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20조).

사. 현행 경주·마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장부기개 대상과 그 신고내용을 다소화함(제50조 및 제51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자가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였던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탈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급 내지 3급(지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 후단 및 동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측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특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환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환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

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5. 과학관유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1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자동차판매자가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에 해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주차장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

니하는 때

2.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주차장(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정한다.

④ 제3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

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전세·지번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에 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구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인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적소등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

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료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료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21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서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서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예)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적용예)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절차 및 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시세감면 등을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한 시세감면 등 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감면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오는 2000. 12. 31까지 연장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은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시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상이등급 6급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만 면제를 하였으나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함(제2조제3항).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기존의 승용차를 양도·폐차했으나 이전·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차를 취득하면 등록상 2차량이 되어 감면이 되지 않는 모순을 개선, 새차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이전·말소등록하면 1차량소유로 간주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다. 장애인의 본인·부모·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시세를 면제하였으나, 장애인의 직계비속 명의로 취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제4조제1항).

라. 현행은 건축주가 60㎡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도 시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사업자등록 미필 등의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면 분양받은 자도 감면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분양받은 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제14조제2항).

마. 일반공동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만 시세면제 대상으로 하고 상가 등은 과세하는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동산 모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자도 주택만 면제대상으로 하고 상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과세하도록 함(제16조).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주민이 직접 주거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주민의 책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최고시일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명시함(제7조제2호).

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는 현행은 주민세를 면제하였으나 과세로 전환됨(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아. 시민공원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수용자의 대

제취득 감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감면과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음 (중전 조례 제14조·제18조 및 제21조).

자. 소형자동차 및 겸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을 97년말 폐지됨 전제로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왔는바 계획대로 이를 폐지하여 조례에 규정하지 않음(중전 조례 제15조 및 제25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46호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요금”을 “교통요금(시내버스·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는 이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4. 언론인, 법조인
5.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재정기획관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소집된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할 때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시민의 일상생활 및 물가안정에 직접관련되는 공공요금(교통요금·도시가스 요금 등)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대폭 확대하고 위원장·부위원장도 위원 중에

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전체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4조).

(1) 위원구성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관계공무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

위원장 및 부위원장 : 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위원 중에서 호선  
나. 위원의 해촉 요건의 장기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원의 품위손상·장기불참 및 위원본인이 원할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위원해촉에 관한 요건을 보완함(제7조).

다.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요구권자를 당초 위원장에서 위원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함(제8조).

라. 시장은 교통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철도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도록 하여 시민 대표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10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3447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제3장의 제명 "시설개선자금의 용자"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로 한다.

제9조 중 "용자사업"을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중 "시설개선자금"을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한다.

제12조 중 "업종별한도액"을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용자한도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육성코자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 및 운영 등의 소요자금"에 용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함(제2조 제1의2호·제2호).

나. 기금의 용도에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추가함(제4조 제1호).

다. 용자계획의 공고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계획도 공고하도록 함(제9조)

라. 기금의 용자대상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를 추가함(제10조).

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용자받 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도

록 함(새10조).

바.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2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48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되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박물관의 전시1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97. 4. 21 시행된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문화시설 운영사업소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직명 등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회의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업무와 직접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나.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시 조직개편의 내용에 맞도록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간사 1인(박물관 전시1과장)으로 통합·운영토록 함(제14조).

※변경내용

간사 :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서기 : 박물관운영관  
→간사 : 박물관 전시1과장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23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49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체계의 개선"을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제9호·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한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0.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11.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4조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차입금 상환

제5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5조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차량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

4. 차입금 상환

제7조 중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의 단속권한이 시장에 부여됨에 따라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와 교통안전법상 의무위반 과태료 등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여 교통시설개선 등 특별회

계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혼잡통행료 수입금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통관리제정의 세입항목에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와 교통안전법상 "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무위반 과태료"를 추가함(제4조제1항).

나. 교통관리제정과 혼잡통행료관리제정의 세입예산이 부족한 때는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다. 혼잡통행료관리제정 세출항목에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차량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